

##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회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58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07년 11 월 일  
발 의 자 : 박 문 태의원외 2 명

### 1. 개정사유

- 지방재정법 제53조(재무회계의 결산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07. 5. 11 법률제8423호) 및 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(2007. 10. 4 대통령령 제20306호)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한편
- 의원수당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 2. 주요내용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범조항변경(안 제1조, 제3조제1항, 제10조)
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 추가 (안 제8조제1항)
-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(안 제8조제2항)
-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(안 제11조제1항)

### 3. 개정조례안 및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붙임

#### 4. 근거법령

-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-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제84조
-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##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5조3항” 을 “제134조제3항” 으로, “제46조 및 제47조” 를 각각 “제82조 및 제84조” 로 한다.

제3조제1항 중 “제56조” 를 “제64조” 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제 6호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 6.재무보고서

제8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「지방재정법」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.

제10조 중 “제47조제3항” 을 “제84조제3항” 으로 한다.

제11조제1항 중 “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” 를 “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” 로 한다.

## 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재무보고서에 관한 적용례) 제8조제1항제6호는 2007 회계연도 분부터 적용한다.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 (목적)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25조3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결산검사위원(이하 “위원”이라 한다)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.....그 방법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다.</p> <p>제8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 위원은 결산에 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한다. 1~5(생략) 6. &lt;신설&gt; ② &lt;신설&gt;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 1 조 ( 목 적 )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 . . . . 제 1 3 4 조 제 3 항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2조 및 제84조.....</p> <p>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조(선임방법 및 절차) ①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..... 제64조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8조(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)①위원은.....</p> <p>....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1~5(현행과 같음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6. 재무보고서</p> <p>②제1항제6호의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한다.</p>

## 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0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.....제47조제3항의</p> <p>.....</p> <p>....</p> <p>제11조 (수당의 지급)</p> <p>①.....다만, 국회의원이 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	<p>제10조(검사의견서의 제출).....제84조제3항의</p> <p>.....</p> <p>....</p> <p>제11조(수당의 지급)</p> <p>①.....</p> <p>. . . . . 다 만 ,</p> <p>.....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</p>

## 의안심사보고서 (의안번호 589)

### 1. 의안명 : 울산광역시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## 2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: 2007. 11. 26.
- 나. 제출자 : 박문태 의원 외 2
- 다. 위원회 회부 : 2007. 11. 26.
- 라. 위원회 상정 : 2007. 12. 13.

### 3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자 : 박문태 의원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법 제53조(재무회계의 결산)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07. 5. 11 법률제8423호) 및 같은법시행령 전부개정(2007. 10. 4 대통령령 제20306호)에 따라 조례의 내용을 상위법에 맞도록 부합시키는 한편
- 의원수당 지급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#### 나. 주요골자

-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른 법조항 변경(안 제1조, 제3조제1항, 제10조)
- 지방의회에 제출하는 세입·세출결산서 첨부서류에 재무보고서 추가(안 제8조제1항)

-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53조 규정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「공인회계사법」에 의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(안 제8조제2항)
-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함(안 제11조제1항)

#### 4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: 원익희)

- 지방자치법 전부개정(2007.5.11 법률 제8423호) 및 같은법 시행령 전부개정(2007. 10.4 대통령령 제20306호)으로 상위법에 맞도록 조례 개정이 필요하며
- 지방재정법 제53조(재무회계의 결산) 및 같은법시행령 제59조(세입·세출결산서 등의 제출)에 따라 재무보고서가 추가되었음, 재무보고서는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것으로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하고 공인회계사법에 의한 회계사의 검토의견을 받아야 함
- 또한 의회 의원이 결산검사 위원일 경우 직무활동으로 보아 수당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되어있음.

#### 5. 관련법규

-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
-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, 제84조
- 지방자치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

#### 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